
KAIA 인권경영 보고서

2021. 12.



목 차

I . 개요	1
1. 인권경영 개념	1
2. 인권영향평가 시행 개요	2
II . 평가결과 및 제언	4
1.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	4
2.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	8

I. 개요

1. 인권경영 개념

- “인권”은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의미하며, “인권경영”은 기관의 경영과 사업에서 임직원, 협력회사,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 요인을 조사하여 인권침해 발생 예방, 인권침해 발생 시 구제제도를 통해 피해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존중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을 의미
- 국제사회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예방뿐만 아니라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 지원을 위해 「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」을 배포하고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권고함
- 진흥원에서도 「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」 적용 권고에 따라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인권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, 인권경영 성과 공개, 인권증진 활동 전개, 구제제도 구축 및 실행 등 인권경영을 추진을 통해 사회적 책임 이행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

[그림 1] 인권경영 추진체계(국가인권위원회)

단계	인권경영 추진 절차 및 내용			
1단계	인권경영 체계 구축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인권경영 추진 시스템 구축 2. 인권경영 선언 및 공표 3. 기관 내 각 부서 확산 4. 기관의 영향권 내에 있는 모든 협력사에 확산 		
2단계	인권영향평가 실시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r> <td style="width: 50%;"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-1단계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실시 1.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실시 계획 수립 2.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교육 3. 인권경영위원회 평가 자료 제출 4. 인권경영위원회 평가 및 결과보고서 작성 5. 최고경영진에 보고 및 공개 </td> <td style="width: 50%;"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-2단계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실시 1.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실시 계획 수립 2.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지표 마련 3. 주요사업 인권경영 체크리스트 교육 4. 인권경영위원회 평가 자료 제출 5. 인권경영위원회 평가 및 결과보고서 작성 6. 최고경영진에 보고 및 공개 </td> </tr> </table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-1단계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실시 1.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실시 계획 수립 2.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교육 3. 인권경영위원회 평가 자료 제출 4. 인권경영위원회 평가 및 결과보고서 작성 5. 최고경영진에 보고 및 공개 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-2단계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실시 1.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실시 계획 수립 2.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지표 마련 3. 주요사업 인권경영 체크리스트 교육 4. 인권경영위원회 평가 자료 제출 5. 인권경영위원회 평가 및 결과보고서 작성 6. 최고경영진에 보고 및 공개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-1단계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실시 1.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실시 계획 수립 2.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교육 3. 인권경영위원회 평가 자료 제출 4. 인권경영위원회 평가 및 결과보고서 작성 5. 최고경영진에 보고 및 공개 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-2단계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실시 1.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실시 계획 수립 2.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지표 마련 3. 주요사업 인권경영 체크리스트 교육 4. 인권경영위원회 평가 자료 제출 5. 인권경영위원회 평가 및 결과보고서 작성 6. 최고경영진에 보고 및 공개 			
3단계	인권경영 실행 및 공개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인권경영 실행 2. 인권경영 전 과정 공개 		
4단계	인권침해 구제절차 제공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인권침해 구제절차 연구와 준비 2. 인권침해 구제절차 수립 3. 인권침해 구제절차 시행 4. 인권침해 구제절차 시행에 대한 평가와 개선 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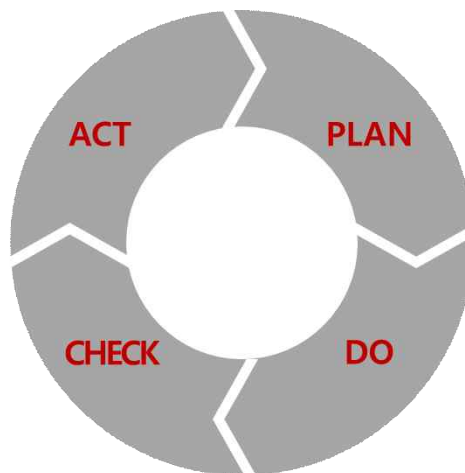
2. 인권영향평가 시행 개요

- **(정의)** 인권영향평가는 UN의 ‘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’의 인권영향에 대한 평가를 체계화한 절차로, 이해관계자 인권의 부정적인 영향을 구조적으로 식별하는 절차이며, 개선과 환류를 포함하고 있음
 -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부정적 인권 영향 대응을 위한 상당주의의무 이행으로서 인권존중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인권영향을 식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응계획을 세우는 것도 포함
- **(목적)** 이해관계자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로 그 영향을 조사하거나 예측 또는 평가하여 부정적이고 해로운 인권 영향, 즉 인권침해의 회피, 제거, 감소에 그 목적이 있음
- **(프로세스)** 인권영향평가는 기관의 경영 및 사업과 이해관계자 분석을 통해 지표를 개발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에서부터 결과분석 및 개선과제 이행점검을 통한 환류까지의 과정으로 진행됨

[그림 2] 인권영향평가 프로세스

[인권경영 보고 및 이행 점검]

- 환류체계 및 후속조치 수립 : 개선과제 부서별 추진계획 수립 및 목표 설정
- 개선과제 수행 및 이행 점검
- 이행 결과 분석 및 환류



[인권영향평가 계획 수립]

- 인권경영 현황 및 사업/이해관계자 분석 →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지표 고도화
- 평가 실시계획 수립
- 평가 참여부서 지정

[인권영향평가 결과 분석 및 개선권고]

- 종합결과 분석 및 외부 전문가 검토
- 개선권고 사항 도출 → 개선과제

[인권영향평가 시행]

- 인권영향평가 작성 실무교육 실시
-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실시 : 지표별 자가점검 및 증빙자료 제출

○ (평가대상) 기관운영 인권 분야 및 주요사업의 담당부서

- 기관운영 : 윤리감사실, 소통경영실(인사, 노사, 복무, 총무, 계약), 기획조정실, 지식정보실
- 주요사업 : 국토인프라실, 기술인증센터

○ (평가 방법) 지표별 담당부서에서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체크리스트를 자가점검, 외부 전문기관에서 평가결과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최종평가 후 인권경영위원회 개최를 통한 평가결과 심의

○ (평가 기준) 지표별 성과 및 실적과 관련 규정 마련 여부 등이 평가기준을 어느 정도 충족하는지를 평가

[표 1]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자가점검 기준

선택 구분	평가 기준	배점
예	지표 관련 내용이 충분히 이행되고 있거나 완료된 경우 (관련 근거(증빙)와 지표 내용이 일치해야 함)	2점
보완 필요	지표 관련 내용이 이행 중이거나 완료되어 있으나, 일부 보완 ·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경우 (구체적 이행을 위한 계획 보완 필요)	1점
아니오	지표 관련 내용을 이행한 실적이 없는 경우	0점
정보 없음	지표 관련 내용의 이행 여부를 기관이 보유한 정보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	평가제외
해당 없음	지표가 체크리스트의 평가대상 부서(사업) 등과 무관한 경우	평가제외

○ (실무교육)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부서별 담당자 대상으로 인권경영 동향 등에 대한 교육과 체크리스트 자가점검 교육 및 자료 제공

- 2021.11.18. 진흥원 회의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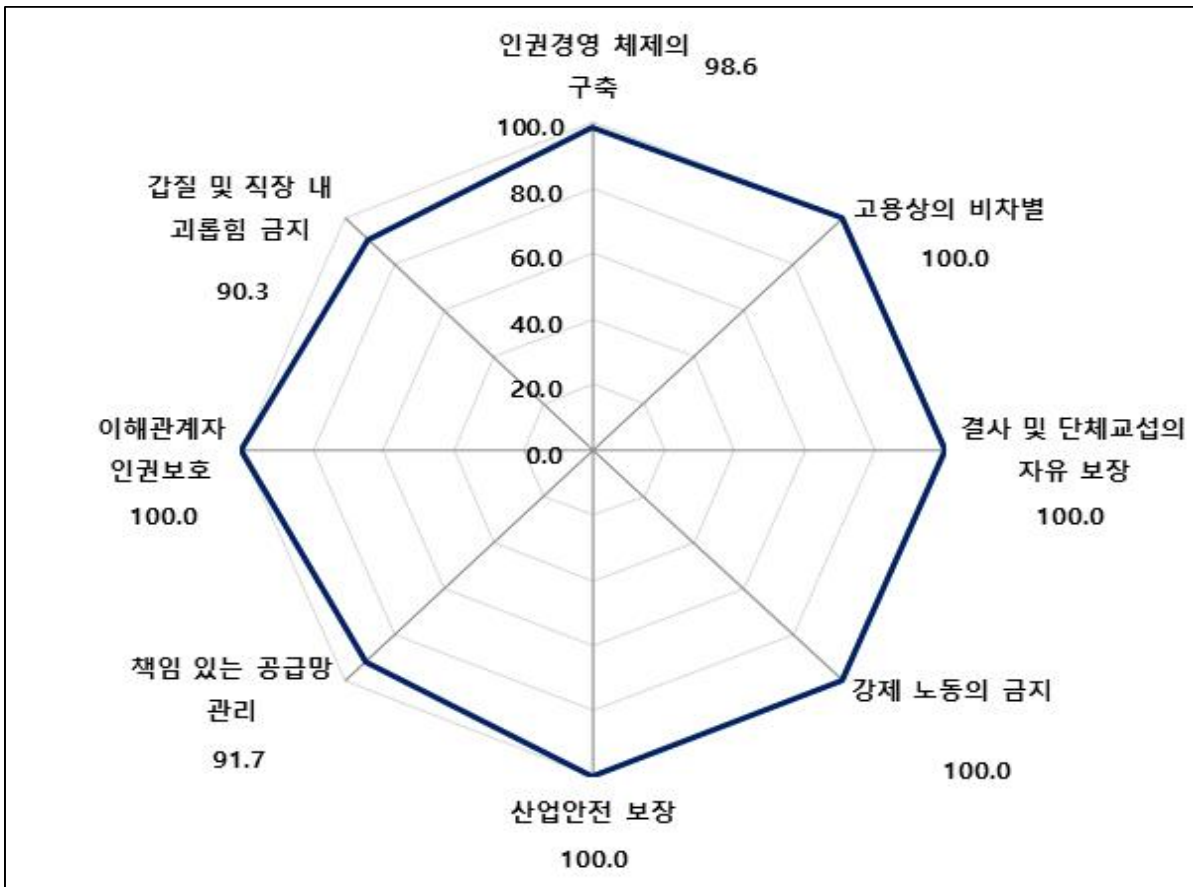
II. 평가결과 및 제언

1.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

□ 종합결과

- ◇ (종합통계) 예 115개(95.8%), 보완 필요 5개(4.2%),
아니오 0개, 정보 없음 0개, 해당 없음 0개
- ◇ (종합점수)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평점 평균은 97.6점

[그림 3]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



- 진흥원 기관 경영과 사업과 관련하여 8대 인권 이슈에 대해 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 관련 부정적 인권 리스크를 식별하고 인권경영 활동과 성과에 대한 평가를 진행함

- 진흥원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는 8개 이슈, 120개 지표를 평가함
 - 9개의 신규지표를 개발하고, 기관 경영 및 사업범위와 연관성이 현저히 적은 8개 지표를 제외함
 - 기관 경영 및 사업추진 전반에 있어 이해관계자 인권 리스크를 식별하고 추진체계 진단, 내부규정 및 관련 제도 내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부분을 파악하여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체계 반영 여부 등을 파악함
- 진흥원 '21년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, 전체 인권 이슈의 평점 평균은 97.6점으로 평가되었으며, 인권경영 체계구축 및 이해관계자 대상 인권경영 확산과 인권증진 활동 추진에 있어 긍정적인 상황인 것으로 나타남
 - 인권 이슈별로 보면 인권경영 체제 구축 및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이슈 관련 일부 보완 필요성이 파악되었음
-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집계 결과, 120개 지표 중 ‘예’ 115개, ‘보완 필요’ 5개, ‘아니오’ 0개, ‘정보없음’ 0개, ‘해당없음’ 0개로 도출됨

[표 2]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총괄표

이슈	분야 수	지표 수	예	보완필요	아니오	정보없음	해당없음	평균
인권경영 체제의 구축	6	33	32	1	0	0	0	98.6
고용상의 비차별	3	14	14	0	0	0	0	100.0
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	3	14	14	0	0	0	0	100.0
강제 노동의 금지	2	10	10	0	0	0	0	100.0
산업안전 보장	4	15	15	0	0	0	0	100.0
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	3	10	9	1	0	0	0	91.7
이해관계자 인권보호	2	10	10	0	0	0	0	100.0
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	3	14	11	3	0	0	0	90.3
합계/평균	26	120	115	5	0	0	0	97.6

□ 주요 이행실적 및 개선권고

- 진흥원은 인권경영 추진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「인권경영매뉴얼」 권고 사항을 적용하여 내·외부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을 위해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인권침해 예방조치 마련, 인권증진 활동과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이행하고 있음
 - 2019년부터 매년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인권 리스크를 파악하여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, 외부위원을 포함한 인권경영위원회 운영을 통해 인권경영현장, 인권경영 종합계획, 인권영향평가 결과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음
 - 청렴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인권침해 발생 시 그 즉시 신고·상담할 수 있도록 인권침해와 갑질 등에 대해 구제제도를 구축하였으며,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홍보하고 모의신고 훈련도 실시하고 있음
 - 홈페이지 내 인권침해 유형 및 예시, 신고절차 등 소개
 - 또한, 계약업무 진행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,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징구하여 공급망 내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관리 노력을 이행하고, 직무관계자 대상 갑질 설문조사, 내부 상주 용역직원 대상 고충상담을 실시하는 등 공급망 인권증진을 위한 개선 노력을 추진하고 있음
- 공공기관의 특성상 서면평가가 일차적 기준인 인권영향평가에서 직원을 위한 규정 및 지침 등에서 인권침해 및 차별 요소는 발견하기 어려운 부분이며, 직원의 인권과 관련된 ‘고용상의 비차별’, ‘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’, ‘노동권 보장’ 등을 위한 규정은 관련 법령 및 상위 기관의 지침 등에 따라 적절히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

□ 개선권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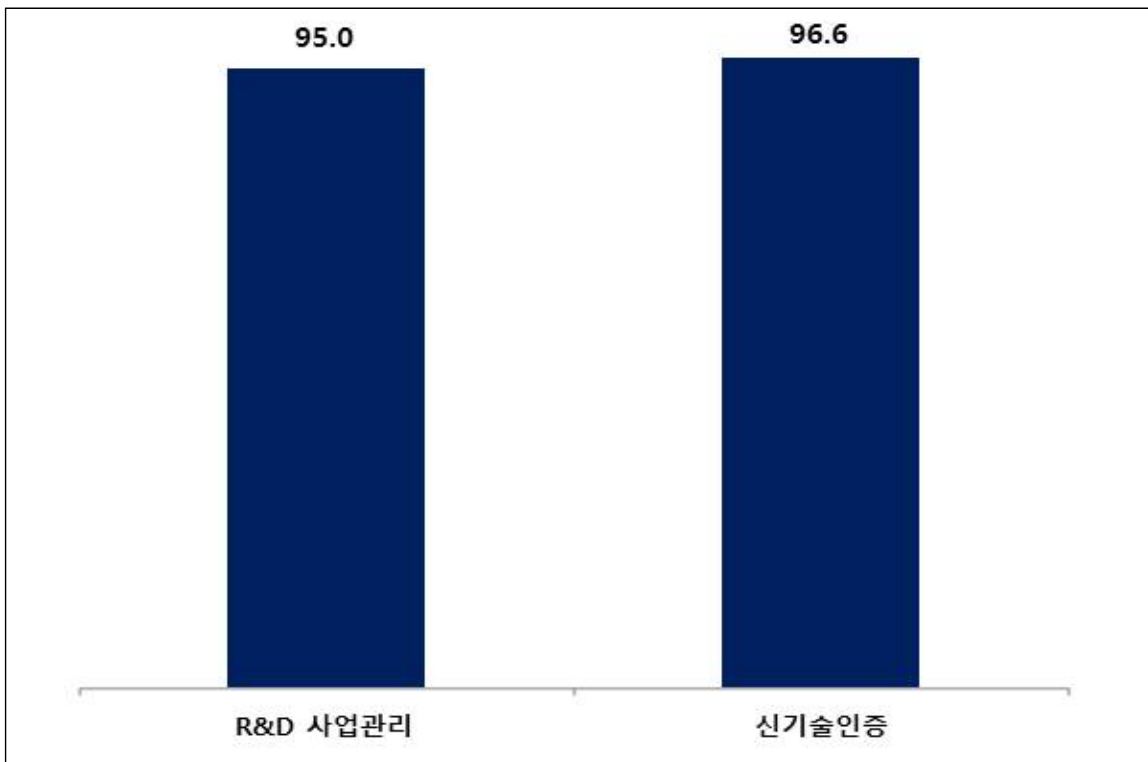
- (인권경영 체제의 구축) 진흥원은 '19년 이후 매년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, 관련 규정 내 정기적인 실시주기 및 범위 등에 대한 명시사 부재하여 인권영향평가의 정기적 실시 내용을 규정화하여 개정 필요('22년 1분기)
- (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) 협력사 내 인권침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인권 침해 발생 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 강화가 요구됨
 - 공급망 인권경영 지원, 인권인식 확산을 위한 진흥원 인권경영 추진현황 공유, 인권경영 교육 콘텐츠 제공,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배포 및 자체 실시 권고, 이해관계자 대상 인권침해 예방 행동수칙 마련 및 전파 등
 - ‘인권침해 예방 행동수칙’ 은 별도 마련이 필요하며, 협력사 근로자 등 외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상호 인권존중, 인격권 보장, 환경권, 안전권, 부정·부패 발생 예방 등의 행동수칙을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음
 - 협력사를 대상으로 현재 수준의 설문조사를 이행하고, 현장실사, 실태설문 등을 확대하는 것은 ‘경영간섭’, ‘갑질’ 등으로 간주되는 등 일부 현실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협력사를 대상으로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, 갑질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공유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방향도 고려될 필요가 있음
- (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) 상호 인권존중 및 소통 중심의 유연한 조직 문화 형성을 위한 인권증진 활동 및 캠페인, 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등 추진 필요
 - 현재도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,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기관장 주도 하에 인권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, 카드뉴스 게시, 인권 퀴즈 등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으나, 인권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메시지를 전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인권증진 콘텐츠(리플렛, 온라인 홍보자료, 인권 카드뉴스, 인권이해 도서 보급 등) 제작 및 확산, 인권 인식도 향상 이벤트(‘인권영향 감상평 이벤트’, ‘인권 퀴즈’ 등),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자가진단(‘인권 자가점검표 운영’, ‘인권 감수성 교육’ 등) 실시, 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(‘성인지 감수성 교육’) 등이 지속 확대되어야 함

2.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

□ 종합결과

- ◇ (종합통계) 예 60개(80.0%), 보완 필요 3개(4.0%),
아니오 7개(9.3%), 정보 없음 1개(1.3%), 해당 없음 2개(2.7%)
- ◇ (종합점수)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평점 평균은 95.8점

[그림 4]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



- 진흥원 당해연도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의 주요 목표 및 내용은 사업 수행에서 이해관계자 인권 리스크를 식별하고 인권침해 예방체계 구축 및 이해관계자 권리 보장 조치 여부 등의 진단하는 것임
- 진흥원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는 2개 사업에 대해 신규로 구성된 지표를 포함하여 총 69개 지표를 평가하였음
 - 10개의 신규지표를 개발하고, 구체화 등 6개의 지표를 수정하였으며, 기관 사업과 관련성이 적은 4개 지표를 제외함

○ '21년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, 평가대상 2개 사업에 대한 평균 점수는 95.8점으로 사업별로 관련 규정 및 지침, 법령 등을 준수하여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,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

- 사업 관련 외부 이해관계자 대상 인권보호 문화 확산과 인권경영 내재화,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인권준중 및 실천 콘텐츠 제공, 인권침해 신고시스템 홍보 등 인권침해 예방체계 및 활동 강화가 필요함

○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집계 결과, 69개 지표 중 ‘예’ 65개, ‘보완 필요’ 2개, ‘아니오’ 2개, ‘정보없음’ 0개, ‘해당없음’ 0개로 도출됨

[표 3]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총괄표

사업 구분		지표 수	예	보완필요	아니오	정보없음	해당없음	평균
R&D 사업관리	과제 접수	12	11	1	0	0	0	95.0
	과제 평가	10	10	0	0	0	0	
	과제 협약	7	6	1	0	0	0	
	과제관리 및 침해구제	11	10	0	1	0	0	
신기술 인증	신기술 접수	12	12	0	0	0	0	96.6
	신기술 심사	13	12	0	1	0	0	
	침해구제	4	4	0	0	0	0	
합계/평균		69	65	2	2	0	0	95.8

□ 주요 이행실적

- 진흥원은 R&D 사업 관리, 신기술 인증 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별 관련 법령, 지침 등을 준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,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공고, 추진 현황 등의 정보를 관련 지침에 의거 성실히 공개하고 있음
 - 외부 이해관계자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공모일정 예고 제도를 도입하였으며(R&D 사업관리), 매뉴얼 책자 및 전자파일, 설명회, 안내 영상, 온라인 컨설팅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업을 안내하고 있음(신기술 인증)
 - 또한, 사업 평가·심사 진행 시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평가단 선정위원회 개최 및 청렴음부즈만 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, 평가·심사 진행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, 평가결과 심의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
 - 외부 이해관계자 민원, 문의사항 대응을 위하여 홈페이지 내 FAQ, Q&A, 고객제안 게시판, 유선 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, 홈페이지 내 ‘서비스 이행표준’, ‘기업민원 보호 서비스 헌장’ 을 게시하여 업무처리 절차 및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
 - 그리고 사업 수행 중 갑질, 악성민원 등에 대응하기 위해 민원 담당 직원 대상 ‘감정노동자 자기보호 매뉴얼’ 을 마련하여 안내하고 있음
- 진흥원 사업추진에 있어 인권경영 인식 확산 및 인권 사각지대 관리를 위한 체계와 관련하여 일부 보완 필요성이 파악되었으며, 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 간 인권침해 예방체계 강화를 위한 지속 이행을 필요함

□ 개선권고

- (R&D 사업관리 - 비차별) R&D 사업 과제 공모 관련 홍보방법 및 대상의 적절성, 다양한 매체의 활용, 홍보 전달 시기, 홍보 매체별 만족도 등 과제 공모 홍보를 개선하기 위한 모니터링 절차는 다소 미흡하여 향후 사업 만족도 조사, R&D 사업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이해관

제자 의견 수렴 및 개선요소를 도출할 필요성이 있음

- 연구개발성과 활용 촉진을 위한 추적조사 : 추적조사 세부내용 중 '연구개발 성과 홍보 등 적절성' : '연구개발성과' 의 홍보 적절성은 조사하고 있음

○ (R&D 사업관리 - 공급망 관리) 외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신고방법, 인권침해 사례 등을 담은 리플렛을 제작하여 R&D 협약, 신기술 신청 접수, 용역 계약 시 이해관계자에게 배포하고 있으나, 연구수행기관이 연구자 개인의 인격권, 근로자 권리 등을 보장하도록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인권경영 콘텐츠(교육, 리플렛 등) 등을 지속 공유하고, 상호 인권존중 캠페인 등을 활성화하여 직원 및 이해관계자(수행기관, 연구자) 간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활동 등이 이루어져야 함

- 연구수행기관이 우월한 지위 및 권한을 이용하여 연구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(갑질, 괴롭힘, 사적업무 지시, 성희롱, 간담회/워크숍/회식 등 모임 참여 강요, 비자발적 강제노동 등)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사항 안내/권고, 예방 교육 콘텐츠(대면교육, 교육자료, 리플렛 등) 제공 등

○ (R&D 사업관리 - 안전보장) 현재 업무 매뉴얼 내 비상상황 대비 지침 및 교육 내용이 부재한 관계로 외부 이해관계자의 연구시설장비 또는 테스트 베드 등 연구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 및 비상상황 등에 연구자가 대응할 수 있도록 진흥원 차원의 안전주의사항 안내(계약 진행 시 안내 및 사업 중 수시 안내)가 필요함

○ (신기술 인증 - 안전보장) 현장실사 진행 시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진행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나(일정포 내 포함), 업무 담당자 및 실사 현장 등의 차별화된 상황으로 인하여 안전 관련 주의내용 고지가 미흡할 수 있으므로 진흥원 차원에서 체계적인 주의사항 안내체계 마련이 요구됨